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38 발의연월일: 2024. 8. 2.

발 의 자:정점식·김미애·임이자

성일종 • 박덕흠 • 장동혁

고동진 • 유상범 • 정희용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히 혈연관계를 기초로 상속 관계를 형성하고, 상속인 중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상속재산의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함.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기여하였거나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도 유류분을 산정하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심각하게 해태하였던 피상속인에 대해, 상속인 사망 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유류분에 대해서도 피상속인과기여상속인들의 재산처분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감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 역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1118조에 대해서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부양의무 해태 등 일정 요건하에서 피 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들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함으 로써 피상속인과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 지임.

주요내용

- 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하는 등 일정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의사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004조의2).
- 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함(안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제1010조).
- 다. 상속인의 유류분 중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112조제4호 삭제).
- 라.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함(안 제1118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 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되다.

제100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의 배우자는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

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유기, 학대 기타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2. 피상속인에게 유기, 학대 기타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 ⑥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 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 분을 명할 수 있다.
-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의 직계비속이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11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11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0조는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제1004조의2, 제10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제1004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등이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② 제11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제1118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00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상속권 상실 선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第1001條(代襲相續) 前條第1項第1 號와 第3號의 規定에 依하여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 또는 兄 弟姉妹가 相續開始前에 死亡하 거나 缺格者가 된 境遇에 그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그 直 系卑屬이 死亡하거나 缺格된 者의 順位에 갈음하여 相續人 이 된다.

第1003條(配偶者의 相續順位) ① (생 략)

②第1001條의 境遇에 相續開始 前에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配偶者는 同條의 規定에 依む 相續人과 同順位로 共同相續人 이 되고 그 相續人이 없는 때 에는 單獨相續人이 된다.

<신 설>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0조제1 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 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 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 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 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 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 이 되지 못한 자의 배우자는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① <u>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u>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유기, 학대 기 타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 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 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 를 한 경우
-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 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 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 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 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2. 피상속인에게 유기, 학대 기
 타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
 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
 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
 를 한 경우
-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수 있다.
-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 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 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 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 항,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 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 ⑤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第1010條(代襲相續分) ①第1001條 의 規定에 依하여 死亡 또는 缺格된 者에 갈음하여 相續人 이 된 者의 相續分은 死亡 또 는 缺格된 者의 相續分에 依한 다.

②前項의 境遇에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直系卑屬이 數人인 때에는 그 相續分은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相續分의 限度에

해치지 못한다.

①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 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의 직계 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 분은 사망 또는 상속인이 되지

서 第1009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를定한다. 第1003條第2項의 境遇에도 또한 같다.

留分) 相續人의 遺留分은 다음 各號에 依한다.

1.~3. (생략)

4. 被相續人의 兄弟姉妹는 그 法定相續分의 3분의 1

第1118條(準用規定) 第1001條, 第 1008條, 第1010條의 規定은 遺 留分에 이를 準用한다.

못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 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1112條(遺留分의 權利者와 遺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 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 1008조, 제1008조의2, 제1010조 는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